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8
------	-----

제출년월일 : 2000. 6. 1.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증 평균 평정점 산출 방법 변경(안 제2조)
-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방법 변경(안 제4조, 제7조)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증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 변경(안 제8조)

3. 관련근거

- 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의 정비

4. 본문 : 붙임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내 성적이 60/100이상인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이상인 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이상인 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이 정수이상일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학교장을 통하여”를 “본인 또는 부모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 등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생략)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평균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2조(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 1. 학내성적이 60/100이상인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이상인 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이상인자)
제4조(선발)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 추천인원이 정수이상일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본인 또는 부모에게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2. (삭제)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반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